

불법주정차 과태료 및 고령자 운전면허증 반납 실태 특정감사 결과

I 감사개요

□ 감사배경 및 목적

- 2015. 12. 7. 국민권익위원회 「불법주정차 단속 의견진술 처리의 공정성 제고방안」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내부 검증을 강화하고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불법주정차 과태료 및 고령자 운전면허증 반납 실태 특정감사를 실시함.

□ 감사대상 및 범위

- 이번 감사는 교통과를 대상으로 2021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2년간 추진한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면제 처리 업무의 적정 여부 및 고령자 운전면허증 반납 인센티브 지급 실태에 감사 중점을 두고 실시하였음.

□ 감사 중점사항

-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적정 여부
- 자진납부 감경 적정 여부
- 과태료 면제 처리 적정 여부 등

II 감사결과

□ 지적사항 총괄

(단위 : 건, 천 원, 명)

행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재정상 조치			
계	시정	주의	현지주의	계	훈계	주의	계	회수	지급	기타
6	1	3	2	1	-	1	-	-	-	-

□ 주요 지적사항

가. 과태료 부과 업무 소홀

주·정차 금지 위반 사실이 확인된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하나, 2022년 1월부터 3월까지 단속된 불법 주정차 금지 위반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일부 누락

-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에 따르면 교차로·횡단 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등에 해당하는 곳에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 법 제32조에 따른 주·정차 금지의 위반 사실이 확인된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하나, 2022년 1월부터 3월까지 단속된 불법주정차 금지 위반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일부 누락하였음.

나. 어린이보호구역 과태료 부과 부적정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1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하나 일반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착오 부과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 등)에 따르면 법 제160조(과태료)에 따른 불법주정차 금지 구역에서의 주정차 위반 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4만원이고, 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주·정차 위반 시 1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음.
- 그러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주·정차 금지 위반 차량에 대해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7]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과태료 부과기준’에서 정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일반 주·정차 금지 구역 부과기준에 따른 과태료로 착오 부과하였음.

다. 의견진술 기한 미준수

사전통지서의 의견진술 기한이 경과하여 의견 제출한 건에 대해 과태료 부과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과태료 부과에 따른 이의제기 기한 60일을 인정하여 면제 처리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에 따르면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통지하여 10일 이상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지정된 기일 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음.
- 그러나 의견제출 기한이 경과하여 의견 제출한 건에 대해 과태료 부과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과태료 부과에 따른 이의제기 기한인 60일을 인정하여 과태료를 면제 처리하였음.

라. 자진납부 감경일자 부적정

사전통지서의 자진납부 기한이 경과한 과태료 부과 건에 대해 납부 기한을 연장하여 과태료 징수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및 시행령 제5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에 따르면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고, 자진납부하는 경우 감경할 수 있는 금액은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한다고 정하고 있음.
- 그러나 사전통지서의 자진납부 기한이 경과한 과태료 부과 건에 대해 납부 기한을 연장하여 과태료를 징수하였음.